#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이정문・이학영・이연희

민형배 • 채현일 • 홍기원

서영석 · 조승래 · 이재관

황명선 · 복기왕 · 박 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들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 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 법률 제 호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등) ① 사업자등은 광고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관심, 기호, 성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그리고 제공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

업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 <u>&lt;신 설&gt;</u>	제5조의2(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등) ① 사업자등은 광고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인보[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이를 사업자들은 제1항에 따라수집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활용하여 소비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라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이를 사전에 그리고 제공할 때
	마다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 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 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u>우</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